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4

발의연월일: 2024. 7. 4.

발 의 자:김기현·한지아·서천호

박성훈 • 박성민 • 인요한

김상욱 • 조지연 • 박형수

박충권 · 정성국 · 서지영

윤한홍 • 곽규택 • 서범수

서명옥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천 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이 아침밥을 거르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로 건강 증진은 물론 쌀 소비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임.

정부와 학생이 각각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학생 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그러나, 대학생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몇몇 대학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대학에서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안정적인 급식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급식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영양 개선을 통한 건강권 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나가려고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급식에 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급식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급식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은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8조의2(급식에 대한 경비의 지
	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급식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급식에 필요한 급식시설ㆍ
	설비비 등은 해당 학교의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